##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생 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와 같다.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4. I클래스 수익증권 : 납입금액이 100억원	4. I클래스 수익증권 : 법시행령 제10조제2
<u>이상인 내국법인</u>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
	조제3항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u>이상인 법인</u>
5.~10.(생략)	5.~10.(현행과 같음)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제40조(보수)	제40조(보수)
①·②(생 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생 략)	1.~3.(현행과 같음)
4. I클래스 수익증권	4. I클래스 수익증권
가. (생 략)	가.(현행과 같음)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다. • 라. (생 략)	다.ㆍ라.(현행과 같음)
5.~10.(생 략)	5.~10.(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1월 15일부
	터 시행한다.